

교무위원회 규정

- 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10장에 의거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호서대학교 교무위원회(이하 “교무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구성 및 임기)**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대학원장(특수대학원장을 제외한다), 각 처·실장 및 각 단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이외의 보직자 중에서 약간 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임교원도 참석할 수 있다.
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 3 조 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.
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4 조 (회의소집)** 교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- 제 5 조 (심의사항)**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·폐에 관한 사항
2. 편제 또는 전공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3. 입학, 졸업, 진급, 수업, 시험에 관한 사항
4. 사무기구의 개폐, 변경에 관한 사항
5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6. 교직원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 6 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자문사항에 관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제 7 조 (관계자 출석)**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자문사항과 관계있는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 또는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.
- 제 8 조 (회의록)** 교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.
- 제 9 조 (간사)** 교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교무위원으로 임명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